

구미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한 수정안

의 안 번 호	
------------	--

제출일자 2018. . .
제 출 자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캠핑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 중 사용료 감면대상에 생계·주거급여 대상자와 한부모가족을 추가하여 사회적 약자 배려 및 문화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.

2. 수정 주요내용

- 기타 감면 대상자 추가(안 별표 2).
 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2조에 따른 수급자 중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생계·주거급여 대상자
 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

구미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한 수정안

구미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별표 2 중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감면대상 \ 대상기간	성수기	비수기	비고
1. 구미시민	20%	20%	카라반, 일반캠핑장, 오토캠핑장, 평상의 사용료에 한함
2. 구미시민 다자녀 가정 (1가정 1실에 한함)	-	50%	
3. 장애인	-	50%	
4. 국가보훈대상자	-	50%	
5. 기타	-	50%	

안 별표 2 비고란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아. 기타 감면 대상은 아래와 같다.

- 1)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2조에 따른 수급자 중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생계·주거급여 대상자
- 2)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

수정안 별표 대비표

현행					개정안					수정안				
감면대상	대상기간	정수기	비수기	비고	감면대상	대상기간	정수기	비수기	비고	감면대상	대상기간	정수기	비수기	비고
1. 구미시민		20%	20%	카라반, 일반캠핑장, 오토캠핑장, 평상의 사용료에 한함	1. 구미시민		20%	20%	카라반, 일반캠핑장, 오토캠핑장, 평상의 사용료에 한함	1. 구미시민		20%	20%	카라반, 일반캠핑장, 오토캠핑장, 평상의 사용료에 한함
2. 구미시민 다자녀 가정 (1가정 1실에 한함)		-	50%		2. 구미시민 다자녀 가정 (1가정 1실에 한함)		-	50%		2. 구미시민 다자녀 가정 (1가정 1실에 한함)		-	50%	
3. 장애인(1~3급)		-	50%		3. 장애인		-	50%		3. 장애인		-	50%	
4. 국가보훈대상자		-	50%		4. 국가보훈대상자		-	50%		4. 국가보훈대상자		-	50%	
5. 기타		-	50%		5. 기타		-	50%		5. 기타		-	50%	
※ 비고 - 사용료 감면은 중복적용 되지 않으며 중복될 경우 할인율이 큰 것을 적용한다. - 사용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과 함께 해당사실을 증명하는 증서를 제시하여야 한다. - 구미시민 감면인 경우 신분증으로 확인한다. - 구미시민 다자녀 가정의 감면인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서류(발급 6개월 미만)를 제시하여야 한다. - 구미시 다자녀 가정이란 주민등록상 주소가 구미시로 되어 있고, 만 19세 미만인 자녀를 3인 이상 둔 가정을 말한다. - 장애인이란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하며 장애인의 장애 등급은 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」 별표 1을 따른다. - 국가보훈대상자 감면 대상은 아래와 같다. 가.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 나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					※ 비고 가. 사용료 감면은 중복적용 되지 않으며 중복될 경우 할인율이 큰 것을 적용한다. 나. 사용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과 함께 해당사실을 증명하는 증서를 제시하여야 한다. 다. 구미시민 감면인 경우 신분증으로 확인한다. 라. 구미시민 다자녀 가정의 감면인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서류(발급 6개월 미만)를 제시하여야 한다. 마. 구미시 다자녀 가정이란 주민등록상 주소가 구미시로 되어 있고, 19세 미만인 자녀를 3인 이상 둔 가정을 말한다. 바. 장애인이란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. 사. 국가보훈대상자 감면 대상은 아래와 같다. 1)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 2)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 3)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·18민주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					※ 비고 가. 사용료 감면은 중복적용 되지 않으며 중복될 경우 할인율이 큰 것을 적용한다. 나. 사용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과 함께 해당사실을 증명하는 증서를 제시하여야 한다. 다. 구미시민 감면인 경우 신분증으로 확인한다. 라. 구미시민 다자녀 가정의 감면인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서류(발급 6개월 미만)를 제시하여야 한다. 마. 구미시 다자녀 가정이란 주민등록상 주소가 구미시로 되어 있고, 19세 미만인 자녀를 3인 이상 둔 가정을 말한다. 바. 장애인이란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. 사. 국가보훈대상자 감면 대상은 아래와 같다. 1)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 2)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				

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 다. 「5·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·18민주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 라.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마.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바.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 - 기타 감면 대상은 아래와 같다. 가.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2조에 따른 수급자 중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생계·주거급여 대상자 나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	4)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5)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6)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	라 등록된 국가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 3)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·18민주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 4)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5)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6)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 아. 기타 감면 대상은 아래와 같다. 1)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2조에 따른 수급자 중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생계·주거급여 대상자 2)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
---	--	--

구미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구미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캠핑장은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연중무휴로 개장·운영한다.

제4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설날 당일

2. 추석 당일

제5조 제목 “(사용시간)”을 “(사용시간 및 사용인원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“사용시간”을 “사용시간 및 사용인원”으로 한다.

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6조(준용)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외수입금 징수의 예에 따른다.

별표 1, 별표 2 및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사용시간 및 사용인원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

규정에 따라 구미캠핑장을 예약한 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■ 구미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[별표 1]

구미캠핑장 시설사용료(제6조 관련)

□ 캠핑장 사용료

구 분		사용시간	요 금 (원)			비 고
명 칭	크 기		비수기(성수기제외)		성수기 (7월~8월)	
			주중	주말		
카 라 반	8m×12m (최대6인)	1동/1일	80,000	100,000	160,000	전기사용료 포 함
오토캠핑	9m×9m (최대8인)	1면/1일	20,000	20,000	30,000	
일반캠핑	4m×5m (최대6인)	1면/1일	15,000	15,000	20,000	
평 상	3m×3m (최대8인)	1개소/1일	10,000	10,000	15,000	전기사용 불가

□ 부대시설 사용료

구 분	사용시간	사 용 료	비 고
샤워장 (8인실/6동)	07:00 ~ 11:00 14:00 ~ 22:00	1,000원	1인/1회기준 (7세 이하 1회무료)
바비큐그릴	1개/1일	10,000원	20개 보유

□ 주차장 사용료

구 분	사용시간	사 용 료	비 고
캠핑장 사용자	당일 14:00 ~ 다음 날 11:00	무료	1대/1회 (그외 차량은 외부주차)

※ 주중 : 일요일 ~ 목요일, 연휴 마지막 날

※ 주말 : 금, 토요일, 법정 공휴일 전일

(공휴일이란 「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」 제2조 및 제3조에서 정한 날을 말함)

※ 성수기 : 7월 1일 ~ 8월 31일 (비수기 :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)

※ 캠핑장 사용시간(1일) : 당일 14:00 ~ 다음 날 11:00

※ 퇴실시간 초과시 (예약자가 있는 경우 연장불가)

- 카라반 : 시간당 10,000원 사용료 추가, 3시간 초과 시 1일 사용료 추가
- 오토캠핑·일반캠핑 : 시간당 2,000원 사용료 추가, 3시간 초과 시 1일 사용료 추가
- 평상 : 시간당 1,000원 사용료 추가, 3시간 초과시 1일 사용료 추가
- 초과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산정

■ 구미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[별표 2]

구미캠핑장 시설사용료 감면율(제7조 관련)

대상기간 감면대상	성수기	비수기	비고
1. 구미시민	20%	20%	카라반, 일반캠핑장, 오토캠핑장, 평상의 사용료에 한함
2. 구미시민 다자녀 가정 (1가정 1실에 한함)	—	50%	
3. 장애인	—	50%	
4. 국가보훈대상자	—	50%	
5. 기타	—	50%	
※ 비 고			
가. 사용료 감면은 중복적용 되지 않으며 중복될 경우 할인율이 큰 것을 적용한다.			
나. 사용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과 함께 해당사실을 증명하는 증서를 제시하여야 한다.			
다. 구미시민 감면인 경우 신분증으로 확인한다.			
라. 구미시민 다자녀 가정의 감면인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서류(발급 6개월 미만)를 제시하여야 한다.			
마. 구미시 다자녀 가정이란 주민등록상 주소가 구미시로 되어 있고, 19세 미만인 자녀를 3인 이상 둔 가정을 말한다.			
바. 장애인이란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.			
사. 국가보훈대상자 감면 대상은 아래와 같다.			
1)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			
2)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			
3)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·18민주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			
4)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			
5)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			
6)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			
아. 기타 감면 대상은 아래와 같다.			
1)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2조에 따른 수급자 중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생계·주거급여 대상자			
2)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			

■ 구미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[별표 3]

구미캠핑장 시설사용료 배상 및 반환기준(제8조 관련)

구 분			배상 및 반환기준	비고
주 체	시 기	유 형		
사용자 귀 책	성수기 주 중	·사용예정일 10일 전 또는 계약체결 당일 취소 ·사용예정일 7일 전 취소 ·사용예정일 5일 전 취소 ·사용예정일 3일 전 취소 ·사용예정일 1일 전 취소 또는 당일 취소	·사용료 전액 환급 ·사용료의 10% 공제후 환급 ·사용료의 30% 공제후 환급 ·사용료의 50% 공제후 환급 ·사용료의 80% 공제후 환급	
		·사용예정일 10일 전 또는 계약체결 당일 취소 ·사용예정일 7일 전 취소 ·사용예정일 5일 전 취소 ·사용예정일 3일 전 취소 ·사용예정일 1일 전 취소 또는 당일 취소	·사용료 전액 환급 ·사용료의 20% 공제후 환급 ·사용료의 40% 공제후 환급 ·사용료의 60% 공제후 환급 ·사용료의 90% 공제후 환급	
	비수기 주 중	·사용예정일 2일 전 취소 ·사용예정일 1일 전 취소 ·사용예정일 당일 취소	·사용료 전액 환급 ·사용료의 10% 공제후 환급 ·사용료의 20% 공제후 환급	
		·사용예정일 2일 전 취소 ·사용예정일 1일 전 취소 ·사용예정일 당일 취소	·사용료 전액 환급 ·사용료의 20% 공제후 환급 ·사용료의 30% 공제후 환급	
관리자 귀 책	성수기 주 중	·사용예정일 10일 전 또는 계약체결 당일 취소 ·사용예정일 7일 전 취소 ·사용예정일 5일 전 취소 ·사용예정일 3일 전 취소 ·사용예정일 1일 전 취소 또는 당일 취소	·사용료 전액 환급 ·사용료 환급 및 사용료의 10% 배상 ·사용료 환급 및 사용료의 30% 배상 ·사용료 환급 및 사용료의 50% 배상 ·사용료 환급 및 사용료의 80% 배상	
		·사용예정일 10일 전 또는 계약체결 당일 취소 ·사용예정일 7일 전 취소 ·사용예정일 5일 전 취소 ·사용예정일 3일 전 취소 ·사용예정일 1일 전 취소 또는 당일 취소	·사용료 전액 환급 ·사용료 환급 및 사용료의 20% 배상 ·사용료 환급 및 사용료의 40% 배상 ·사용료 환급 및 사용료의 60% 배상 ·사용료 환급 및 사용료의 90% 배상	
	비수기 주 중	·사용예정일 2일 전 취소 ·사용예정일 1일 전 취소 ·사용예정일 당일 취소	·사용료 환급 ·사용료 환급 및 사용료의 10% 배상 ·사용료 환급 및 사용료의 20% 배상	
		·사용예정일 2일 전 취소 ·사용예정일 1일 전 취소 ·사용예정일 당일 취소	·사용료 환급 ·사용료 환급 및 사용료의 20% 배상 ·사용료 환급 및 사용료의 30% 배상	

비고

1. 제8조제1호의 천재지변으로 캠핑장 사용이 불가한 경우는 기상청이 강풍·풍랑·호우·대설·폭풍해일·지진해일·태풍·화산주의보 또는 경보(지진포함)를 발령한 경우로 한정됨
2. 사용자가 사용당일 사용예정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당일 자동취소되며 자동취소시 사용료 반환은 불가함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개장일) <u>캠핑장은 연중무휴로 개장·운영한다.</u> 다만, 제12조제1항의 경우에는 캠핑장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. <u><신 설></u> <u><신 설></u>	제4조(개장일) <u>캠핑장은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연중무휴로 개장·운영한다.</u> ----- -----. <u>1. 설날 당일</u> <u>2. 추석 당일</u>
제5조(사용시간) 캠핑장 시설의 <u>사용시간은 별표 1과 같다.</u>	제5조(사용시간 및 사용인원) -- <u>사용시간 및 사용인원</u> --.
제16조(준용) 이 조례에서 정하지 <u>아니한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.</u>	제16조(준용) 사용료 징수 등에 <u>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외수입금 징수의 예에 따른다.</u>